

## 제 4 부 정부조달

### 제 15 장 정부조달

#### 제1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조달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15.1에 포함된 조달기관을 말한다.

**정부조달**이라 함은 정부가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해서나 상업적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에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부활동의 목적상 모든 계약적인 수단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해, 그 사용을 확보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응구매**라 함은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한다.

**공개입찰 절차**라 함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민영화**라 함은 각 당사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의해 계획된 대로 대상 기관의 주식의 공공 입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더 이상 정부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설치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이러한 권리 부여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함께 지불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조달계약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공급자**라 함은 조달기관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기술규격이라 함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또는 상품생산 과정 및 방법과 같은 조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요건을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입찰자라 함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를 말한다.

### 제15.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달기관이 구입 선택권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 및 대여 또는 임차를 포함한 모든 계약적 수단을 통해 부속서 15.1과 15.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행하는 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공공사업허가 및 설치·운영·인도 계약은 조달로 간주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교부금, 대부,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협력의 합의, 인이나 주·지역 또는 지방 정부에 대한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외원조를 제공할 직접적 목적에 따른 구매를 포함하여 정부나 국영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원조, 또는 비계약적 합의,
- 나. 이 장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조건하에 제공된 국제 교부금, 대부 또는 그 밖의 원조를 통해 조성된 자금에 의한 구매,
- 다. 정부 고용인의 채용과 조달기관의 그 밖의 장기직원 및 인력의 채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고용조치, 그리고
- 라. 금융서비스.

3.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 따른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계약을 준비, 계획 또는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3조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1.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자국의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이 양 당사국의 모든 공급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또한 공개적이고 실효적인 경쟁 원칙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2.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 자국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장이 적용되는 정부조달 관련 법규,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조달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인과의 대외 제휴관계나 동인의 소유권의 정도에 근거하여, 자국내에 설립된 어떤 공급자에게 자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음, 그리고

나. 자국의 조달기관이 자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서 제안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공급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음.

4. 이 조는 관세 또는 수입에 대해 부과되거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와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각종 제한과 형식을 포함한 그 밖의 수입관련 규정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조는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을 특정적으로 규율하는 조치가 아닌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5.4조 대응구매의 금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공급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 및 선정, 입찰의 평가, 낙찰에 있어서 대응구매를 고려하거나 모색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제15.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표준약관을 포함하여 이 장이 적용되는 조달과 관련한 법령, 판례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 및 절차를 공식적으로 지정된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적절한 공표매체를 통해 신속히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각종 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1항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신속히 공표한다.

## 제15.6조 입찰절차

1. 조달기관은 이 장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각각의 국내절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들의 공공계약을 체결한다.

2. 입찰절차가 경쟁을 회피하거나 국내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적용가능한 경우 다음의 상황하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가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 가. 이전의 입찰절차에서 제공된 입찰서류에 기술된 참여요건을 포함한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이 부재한 경우, 체결되는 계약에서 그러한 이전의 조달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 나. 예술품의 경우이거나 특허, 저작권 또는 재산정보와 같은 전속적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술적 사유로 인해 경쟁이 부재하여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나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 공급자를 변경할 경우에 조달기관이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과의 호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기존의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설치물을 위한 대체부품, 연장물이나 지속적 서비스로 의도된 원공급자의 추가적인 납품의 경우,
- 라. 1차상품 시장에서 구입하는 호가 상품의 경우, 그리고 정규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가 아닌, 흔하지 않은 판매처분으로 극히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구매의 경우,
- 마.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시초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 과정에서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위하여, 그 조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되는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 바. 최초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원래의 입찰서류에 기술된 목적과 합치하는 추가적 건설서비스가 원래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해진 경우. 이러한 추가적 건설서비스에 대한 총 낙찰가액이 주계약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또는,
- 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해 초래된 극도의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구득될 수 없고, 이러한 공개입찰 절차를 사용하면 조달기관, 업무계획에 대한 조달기관의 책임 또는 당해 당사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로서 엄격히 필요한 경우. 이러한 예외는 사전계획의 부재에 기인하거나, 특정기간 동안 조달기관에게 가용한 예산과 관련한 우려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양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 기초하여 공개입찰 절차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할 때마다 조달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기록을 유지하게 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의 구체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제15.7조 공급자의 조달에의 참여 조건

1. 공급자의 조달에의 참여가 허용되기 전에 조달기관이 공급자에 대해 등록, 자격 또는 어떠한 다른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공급자들이 조달 참여를 위한 요건인 등록이나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여타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입증을 위해 신청할 것을 초청하는 공고가 관심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조달기관이 이러한 신청에 근거하여 평가·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표되는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조달에의 참여를 위한 조건이 잠재적 공급자가 조달의 요건 및 기술규격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수적 조건들에만 한정되고 자격에 대한 판정이 통보나 입찰 문서를 통해 사전에 명시된 참여조건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공급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달기관이 공급자에 대해 조달에의 참여를 허용하기 전에 이러한 명단에 먼저 포함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사전에 이러한 요건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입찰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한 즉시 적절한 절차를 개시하여 이러한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4.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공급자가 이전에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을 수여받았을 것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사전 업무경험이 있을 것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5.8조 사전 공고

1. 이 장이 적용되는 각 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달기관은 제15.6조제2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심있는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초청하는 사전 공고를 공표한다.

2. 조달계획의 사전 공고는 조달계획에 대한 기술, 공급자들이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조건, 조달기관의 이름, 모든 조달관련 문서를 구독 가능한 주소 및 입찰 제출의 기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조달기관은 이해관계 있는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적시에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수단은 부속서 15.2에 지정된 단일 접근경로를 통해 무료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제15.9조 입찰 설명서

1.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입찰 설명서는 공급자가 입찰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2. 계약 조달기관이 전자문자 형태로 모든 입찰서류 및 보장서류에의 자유로운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달기관은 당사국의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 입찰 설명서를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제15.10조 기한

1. 조달과정 동안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한은 공급자가 조달의 특성 및 복잡성과 관련하여 입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은 조달계획의 사전공고 일자와 입찰 최종 제출일 사이에 최소한 10일의 간격을 둔다.

### 제15.11조 기술규격

1. 기술규격은 공고, 입찰 설명서 또는 추가 서류에 규정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양당사국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조달기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은

가. 디자인이나 특징의 묘사보다는 성능 및 기능 요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야 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규정<sup>2)</sup>, 인정된 국가표준<sup>3)</sup> 또는 건축법규에 근거하여야 한다.

4. 제3항은 조달기관이 그 항에서 언급된 기술규격의 사용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모든 경우에 조달기관은 기술규격에 합치하지는 않으나 그 필수요건은 충족하고 입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입찰을 고려하여야 한다. 입찰 설명서내의 기술규격에 대한 언급은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어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조달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고, “또는 이와 동등한 것”과 같은 어구가 입찰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표나 상호, 특허, 디자인이나 형태, 특정 원산지, 생산자나 공급자에 관한 요건이나 언급이 없어야 한다.

7. 입찰자는 자신의 입찰이 필수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 제15.12조 낙찰

1. 입찰서가 낙찰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는 개찰 시점에 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의 필수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참가조건을 준수하는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2. 조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조달기관은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정된 입찰자로서 입찰 설명서에 명시된 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하다고 판정된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2) 이 장의 목적상, 기술규정이라 함은 적용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서비스,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3) 이 장의 목적상, 표준이라 함은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규칙, 지침 또는 특성들을 규정한 문서로서 공인된 기구가 승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닌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서비스,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요건들을 포함하거나 이들을 배타적으로 다룰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정부조달 과정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보장한다

### 제15.13조 이의제기

1. 조달기관은 조달절차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공급자들의 이의제기를 공평하게 그리고 적시에 검토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 장의 위반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적이고, 적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3. 이의제기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기관이 심리한다. 법원이 아닌 심사기관은 사법심사의 적용을 받거나 또는 법원과 유사한 절차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4.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적절한 경우 이 장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입은 손실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입찰준비 및 이의제기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제15.14조 정보기술 및 협력

1. 양 당사국은 투명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특히 조달기관이 제공하는 입찰기회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부조달체계 및 통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상호 기술협력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5.15조 적용범위의 변경

1. 일방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변경을 통보한다. 그리고
- 나. 이러한 통보후 30일 이내에, 그 변경전에 존재하던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적용범위가 유지되도록 자국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적 조정을 타방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2. 제1항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당사국이 이 장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다음과 관련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보상적 조정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가.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과 부속서 15.1에 대한 사소한 개정, 또는
- 나. 민영화의 결과 정부의 통제나 영향이 유효하게 제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달기관과 관련된 사항.

3. 적절한 경우, 자유무역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이 통보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결정을 통해 관련 부속서를 개정한다.

#### **제15.16조 추가 협상**

향후 일방 당사국이 비당사국에 대해 이 장에 따라 합의된 정부조달 시장 접근의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주의의 기초위에서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 **제15.17조 정부조달 실무작업반**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정부조달 체계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수단의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한 양자간 협력,
- 나. 당사국이 수행하는 조달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통계 및 여타 정보의 교환, 그리고 이 장의 적용 결과의 교환, 그리고
- 다. 이 장에 따른 시장접근 약속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협상의 잠재적 이익의 탐구.

부속서 15.1  
정부조달 범위

부록 1  
중앙정부기관

1. 양허하한선

**물품구매**

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50,000SDR

**서비스구매**

부록 5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50,000SDR

**건설서비스구매**

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5,000,000SDR

2. 칠레 기관목록

- 공화국 대통령실
- 내무부
  - 내무차관실
  - 지역발전차관실
  - 국가비상사무소
  - 공안정보국
  - 국가마약통제위원회
  - 선거관리청
  - 국가기금
- 외무부
  - 외무차관실
  - 국제경제관계총국
  - 칠레남극연구소
  - 국경국

- **국방부**
  - 육군차관실
  - 해군차관실
  - 공군차관실
  - 경찰차관실
  - 수사차관실
  - 국방행정국
  - 민간항공국
  - 국가동원총국
  - 국가정치전략연구원
  - 민간방위총국
- **재무부**
  - 재무차관실
  - 예산국
  - 국세청
  - 국고총국
  - 관세청
  - 조폐청
  - 국가조달국
  - 은행 및 금융기관감독원
  - 증권보험감독원
- **대통령실 정무부**
  - 대통령실 정무차관실
  - 국가환경위원회
- **국정홍보부**
  - 국정홍보차관실
  - 국가체육연구원
  - 사회단체국
  - 통신문화국
- **경제진흥재건에너지부**
  - 경제차관실
  - 수산차관실
  - 국가에너지위원회집행사무국
  - 외국인투자위원회
  - 국가소비자청
  - 국가경제감독위원회
  - 국가통계청
  - 국가수산청

국가관광청  
전기연료감독원  
천연자원정보센터  
기술연구공사  
어업진흥연구원  
산림연구원  
국가표준연구원  
기술협력청  
국가기술생산성발전기금  
생산진흥공사

- **광업부**

광업차관실  
칠레원자력위원회  
칠레동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지질광업청

- **기획협력부**

기획협력청  
국가원주민육성공사  
사회투자결속기금  
국가장애자기금  
국가청소년연구원  
국제협력청

- **교육부**

교육차관실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  
도서관박물관문헌국  
국가학비보조장학금위원회  
국가유치원위원회  
국가도서위원회  
영화평가위원회  
예술문화발전기금

- **법무부**

법무차관실  
사법지원공사  
주민등록청  
국가도산감독위원회  
검시청

국가미성년청

국가교정국

- **노동사회보장부**

노동차관실

사회보장차관실

노동국

담보신용총국

사회보장지원연구원

국가직업훈련고용청

연금기금관리감독원

안전보장감독원

국가연금지원기금

- **공공사업부**

공공사업차관실

공공사업총국

공공사업관리집행청

사업허가청

공항국

건축국

항만사업국

기획국

수리사업국

도로사업국

회계재무국

국가수리연구원

급수·배수사업감독원

- **교통통신부**

교통차관실

통신차관실

민간항공위원회

차량검사인증센터

국가통행안전위원회

통행통제운영단

- **보건부**

보건차관실

국가보건서비스중앙공급제도

국가보건기금

공공보건연구원

의료보험감독원  
아리카지역 보건소  
이끼계지역 보건소  
안또화가스따지역 보건소  
아따까마지역 보건소  
꼬깸보지역 보건소  
발빠라이소-산안또니오지역 보건소  
비나텔마르-끼요따지역 보건소  
아끈까구아지역 보건소  
리베르따도르 헤네랄 베르나르도오 히긴스 보건소  
마울레지역 보건소  
누블레지역 보건소  
꼰셉시온지역 보건소  
딸까우아노지역 보건소  
비오-비오지역 보건소  
아라우꼬지역 보건소  
북아라우꼬지역 보건소  
남아라우꼬지역 보건소  
탈디비아지역 보건소  
오소르노지역 보건소  
얀끼우에-칠로에-빨레나지역 보건소  
아이센지역 보건소  
마가야네스지역 보건소  
수도권동부지역 보건소  
수도권중부지역 보건소  
수도권남부지역 보건소  
수도권북부지역 보건소  
수도권서부지역 보건소  
수도권남동부지역 보건소  
수도권환경보건소

- **주택도시계획부**

주택차관실  
산티아고 수도권공원관리청  
지방주택도시계획청

- **국가재산부**

국가재산차관실

- **농업부**

농업차관실

국가관개시설위원회

국가산림공사

농목발전연구원

농업정책연구청

축산농업청

농목조사연구원

- **국가여성부**

국가여성차관실

- **지방정부**

제I주

아리카군

빠리나꼬타군

이끼께군

제II주

안또화가스따군

엘로아군

또꼬빠야군

제III주

차나랄군

꼬빠아뽀군

제IV주

우아스꼬군

엘끼군

리마리군

초아빠군

제V주

빠또르까군

발빠라이소군

산펠리베데아꼐까구아군

로스안데스군

끼요따군

산안또니오군

이슬라테빠스꾸아군

제VI주

차빠뽀알군

꼐차구아군

까르데날 까로군

제VII주

꾸리꼬군  
딸까군  
리나레스군  
까우께네스군

제VIII주

누블레군  
비오-비오군  
꼰셉시온군  
아라우꼬군

제IX주

말레꼬군  
까우뎨군

제X주

발디비아군  
오소르노군  
얀끼우에군  
칠로에군  
빨레나군

제XI주

꼬이하이께군  
아이센군  
헤네랄까레라군

제XII주

까삐탄쁘랏군  
울띠마에스빠란군  
마가야네스군  
띠에라델후에고군  
칠레남극군  
수도권주  
차까부꼬군  
꼬르디예라군  
마이쁘군  
딸라간떼군  
메리빠야군  
산티아고군



### 3. 한국 기관목록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목록에 규정된 정부기관의 구매분에 한하며, 부록 2 및 부록 3의 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범위와 양허하한선에 따른다.)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매를 제외한다.)

#### 4. 부록 1의 주식

##### 칠레

상기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한다.

##### 한국

1. 상기 중앙행정기관은 산업적·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하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이 부록은 국가계약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

3. 국방부군수본부는 국방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반주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서, 이 협정은 국방부의 구매에 대해서는 다음 FSC 분류품목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부록 5 및 6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만 적용된다.

군급번호	품 목
2510	차량의 운전실 및 몸체등 구조의 부품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2590	잡종 차량 부품
2610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품
3020	기어 · 활차 ·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3416	선반
3417	절삭기
3510	세탁장비
4110	냉동장비
4230	오염제거 및 주입용 장비
4520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4940	잡종장비 및 수리공장용 특수장비
5120	동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축물
5530	합판
5660	울타리 및 문
5945	계전기 및 원통코일
5965	헤드세트 · 핸드세트 ·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 도파관 및 관련장비
5995	선 · 코드 및 전선조립체 :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6840	살충 및 소독제
6850	기타 잡종 화학특수 생산품
7310	음식조리 · 제빵 및 급식용 장비
7320	주방설비 및 기구
7330	주방용품 및 그릇
7350	식기
7360	취사 및 급식용품
7530	사무용품
7920	비 · 솔 ·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등
8110	저장용기
9150	기름 및 윤활유등
9310	종이류

## 부록 2 지방정부기관

### 1. 양허하한선

#### 물품구매

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200,000SDR

#### 서비스구매

부록 5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200,000SDR

#### 건설서비스구매

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

### 2. 칠레는 이 부록상 의무가 없음.

### 3. 한국 기관목록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4. 부록 2의 주석

##### 한국

- 가. 상기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 나. 이 부록은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

## 부록 3 모든 다른 기관

### 1. 양허하한선

#### 물품구매

부록 4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450,000SDR

#### 건설서비스구매

부록 6에 구체적으로 지정

양허하한금액: 15,000,000SDR

### 2. 칠레 기관목록

아리카 항만공사  
이끼끼 항만공사  
안또화가스따 항만공사  
고킴보 항만공사  
발빠라이소 항만공사  
산 안또니오 항만공사  
산 빈센떼-딸까우아노 항만공사  
부에르또몽 항만공사  
차까뿌꼬 항만공사  
아우스뜨랄 항만공사  
민간항공국 산하 국영공항

### 3. 한국 기관목록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세번번호 8504, 8535, 8537 및 8544의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

#### 4. 부록 3의 주식

##### 칠레

이 부록은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가.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

나.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

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된다.

##### 한국

1. 이 부록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한 수의계약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품목을 지정한 뒤에 한국은 칠레에 추가된 품목의 명단을 매년 통보할 것이다.

2. 이 부록은 다음의 활동을 담당하는 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다른 공공사업에 적용된다.

가. 공항 또는 항공수단 운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의 사업분야

나. 해운, 내륙항만의 사업분야 또는 바다 또는 내륙수로에 의한 터미널 사업분야

다만, 그 시설이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는 제외된다.

## 부록 4 공 급

일반 주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과 칠레 정부는 부록 1 내지 3에서 달리 구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공급을 포함한다.

이 부록에 대한 주석은 없다.



## 부록 5 서비스

이 장의 목적상, 제15.2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일반 서비스목록(WTO/MTN.GNS/W/120)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는 없다.

## 부록 6 건설서비스

이 장의 목적상, 제15.2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표준산품분류(CPC)하의 건설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건설서비스는 없다.

## 부록 7 일반주석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수단이나 국제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으로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인,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한국은 선택입찰 절차가 공개입찰 절차의 일종이며, 동 절차는 부록 1 내지 3에 열거된 조달기관이 설정한 공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양해한다.

부속서 15.2  
정부조달 실행

부록 1  
공고 수단 (제15.8조제3항 참조)

칠레

칠레 관보  
<http://www.chilecompra.cl>

한국

한국 관보  
<http://www.g2b.go.kr/>

## 부록 2 양허하한선의 가액

1. 계약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조달기관은 조달 금액이 이 장의 부속서 15.1의 당사국별 부록에 규정된 관련 금액 이하로 추산되는 모든 조달계약을 포함한다. 조달기관은 이러한 추산액에 조달의 최대 추산가액 합계와 그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계약을 포함하고, 그 계약에서 제공되는 모든 선택 사양, 프리미엄, 요금,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및 보수를 포함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규정된 양허하한선의 자국통화 환산가액을 공표한다.
3. 한국의 경우 가액의 평가는 10월 1일 또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4개월 동안의 SDR 대 원화의 일평균환율의 평균에 의한다. 자국통화 환산가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한다.
4. 칠레의 경우 8월 말일부터 역산한 SDR 대 칠레 페소의 24개월 동안의 일평균환율에 기초한다. 자국통화 환산가액은 다음해 1월 1일에 발효한다.
5. 자국통화로 환산된 양허하한선은, 필요한 경우, 칠레는 1만 칠레 페소에서, 한국은 1천만원에서 절사한다.